

# 평창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257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3. . .  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기존 봉안당 시설 사용 종료에 대비하고, 분묘를 개장하여 안치할수 있게 하기 위하여, 연면적 660㎡, 5,000기 규모의 봉안당 신축 사업을 추진하면서,

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“평창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”를 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주변지역 주민의 정의 (안 제2조)

- "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"이란 장사시설이 위치한 행정구역상의 읍·면민을 말한다. (다만, 사업의 원활 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접 읍·면을 포함할 수 있다.)

나. 주민지원 재원 확보 (안 제3조)

- 연간 장사시설(봉안당)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2 금액

- 평창군 일반회계 예산

다. 지원대상 사업 (안 제4조)

- 소득향상사업(농업, 임업, 축산업, 수산업, 상업 및 공업시설)
- 주민복지증진사업(의료, 복지, 도로, 상수도, 교육, 문화 체육)
- 그 밖에 지역주민이 필요하다고 읍면장이 요청한 사업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“별첨”

나. 예산조치 : 2014 당초예산 10억원 반영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- (1) 입법예고(2013.5.16. ~6.5.) 결과, 평창읍변영회에서 평창읍 포함의견 제출 ⇒ 단서조항 추가
- (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## 평창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장사시설 주변 지역주민의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"장사시설"이란 평창군이 설치 운영하는 화장시설,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말한다.

② "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"이란 장사시설이 위치한 행정구역상의 읍·면민을 말한다. 다만,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접 읍·면을 포함할 수 있다.

제3조(재원) ①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연간 장사시설(봉안당)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2 금액
2. 평창군 일반회계예산

② 평창군수는 제1항제1호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4조(재원의 용도) 재원은 지역주민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한다.

1. 소득향상사업(농·임·축산업, 수산업, 상업 및 공업시설의 설치)
2. 주민복지증진사업(의료, 사회복지, 도로, 상·하수도시설, 교육·문화·체육·주거)

3. 그 밖에 지역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읍·면장이 요청한 사업  
제5조(대상사업의 결정) 평창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업 중 타당성을 검  
토한 후 대상사업을 결정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비 용 추 계 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장사시설 주변 지역주민의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"장사시설"이란 평창군이 설치 운영하는 화장시설,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말한다.
- "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"이란 장사시설이 위치한 행정구역상의 읍·면민을 말한다. 다만, 사업의 원활 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접 읍·면을 포함할 수 있다.

## 2. 비용 추계결과

### 가. 추계의 전제

- 연간 장사시설(봉안당)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2 금액
- 평창군 일반회계예산

### 나. 추계 결과

- 연간 사용료 : 봉안당 사용료 182,600원 × 50기 × 12% = 1,095,600원
- 일반회계 편성 : 방림면 20억, 평창읍 10억

### 다. 재원조달 방안

- 전액 지방세 및 세외수입 조달

## 3. 작성자

작성자	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
연락처	(033) 330 - 2150



# 관 계 법 령

## □ 장사 등에 관한 법률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·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제23조(공설묘지 등의 사용료·관리비의 부과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·공설화장시설·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,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, 시설물 설치·조성비용,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.

## □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화장시설,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·조성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해당 장사시설 등의 운영을 지역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기는 등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. ④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,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·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.